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등에 대한
장기등기증희망 의사 확인 및 신청 접수 근거 마련〉
■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945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등에 대한 장기등기증희망 의사 확인 및 신청 접수 근거 마련	3

I. 개요

1.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94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주민의원 등 17인

(2) 제 안 일 : 2024. 10. 28.

(3) 회 부 일 : 2024. 10.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등록기관에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방법을 모바일·인터넷·우편 또는 등록기관 현장방문 등으로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이나 정기 적성검사, 운전면허증의 발급·갱신 발급과 같은 계기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장기등기증희망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장기등기증희망신청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로교통공단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이나 정기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및 운전면허증을 발급·갱신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 및 운전면허증 발급·재발급 또는 갱신 발급 신청자 등에게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의 법정업무로 규정함으로써 장기등기증희망등록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 15조의2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등에 대한 장기등기증희망 의사 확인 및 신청 접수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등에 대하여 장기등기증희망자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신청을 접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u>제15조</u> 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 6. (생략)	제4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 ----- ----- <u>제15조 또는 제15조의2</u> ----- -----. 4. ~ 6. (현행과 같음)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 ~ 5. (생략)

<신설>

-----.

1. -----

-----제15조 또는 제15조의2-----

2. ~ 5.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한국도로교통공단의 장기등기증희망자등록신청 접수 등) ①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자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 「도로교통법」 제85조·86조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재발급 또는 갱신 발급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을 발급·재발급 또는 갱신 발급 받는 사람
 3.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기 적성검사를 받는 사람
- ②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장기등기증희망자등록을 신

제17조(뇌사추정자의 신고 및 뇌사판정의 신청)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생략) 2. 뇌사추정자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진료담당의사. 이 경우 뇌사추정자가 <u>제15조의 장기등기증희망자인</u> 경우로 한정한다. ④ (생략)	<u>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하고, 접수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u> ③ 제2항에 따라 신청 접수 결과를 통보받은 <u>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u> ④ <u>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이 장기등기증희망등록에 관한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u> ⑤ 제2항에 따른 접수 및 통보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 대한 통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뇌사추정자의 신고 및 뇌사판정의 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2. ----- ----- -----<u>장기등기증희망자</u>----- -----. ④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에 따르면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장기이식등록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한적십자사 등)에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해당 신청 접수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린 후,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수행할 수 있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장기이식등록기관) ①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등록기관이 등록받을 수 있는 장기등의 종류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4.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③ 등록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는 제25조에 따른 이식의료기관에서 수행한다.

1. 장기등기증희망자·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업무
2.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신체검사에 관한 업무

3. 장기등기증희망자·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접수·등록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통보하는 업무

4.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상담

5.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접수·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등록에 관한 서식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①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에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등록기관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신청만을 접수하고, 그 밖의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신청 접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접수 결과를 통보받고 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등록기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이 장기등기증희망등록에 관한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개정안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나 운전면허증을 발급·재발급 또는 갱신 발급받는 사람, 정기 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에게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나 운전면허증 발급·재발급 당사자 등이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도록 함으로써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서,

장기등 기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증희망등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되어, 최근 장기이식대기자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기기증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최근 3년간 장기 기증·이식 관리 현황 >

(단위: 명, 건, 2024.11월 기준)

연도	장기이식 대기자	장기이식 형태			
		계	뇌사장기이식건수 (뇌사기증자)	생체장기이식 건수	사망자 안구이식건수 (사후기증자)
2021	45,843	5,977	1,779 (442)	4,129	69 (42)
2022	49,765	5,531	1,642 (405)	3,841	48 (25)
2023	51,876	5,936	1,953 (483)	3,900	83 (38)
2024.11.	54,551	4,509	1,370 (368)	3,122	17 (7)

자료: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이식관리시스템

- 이와 관련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영국 등의 경우에는 운전 면허 응시 및 면허증 갱신 시 장기기증 희망 신청을 접수하고 있고, 프랑스와 스페인 등 일부 국가는 생전에 장기기증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잠재적 기증자로 추정하는 opt-out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참고자료).
- 다만, 장기기증 관련 업무 전문성이 없는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 담당자가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에 대한 문의를 받을 경우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함으로써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이미 장기기증 관련 홍보에 적극 협조 중이며,공단 고유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추가할 경우 민원창구 직원의 업무가 과중해질 것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지난 2024년 2월 동법 제6조 개정을 통하여 신분증 발급 등의 대상자에게 장기등의 기증 및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안내를 하도록 제도가 신설되어 2025년 8월에 시행될 예정이므로, 그 시행 경과와 업무 절차의 조율 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여야 하고, 장기등의 적출·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5. (생략)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재발급 또는 갱신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 및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안내

가.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나. 「여권법」 제4조에 따른 여권

다. 「도로교통법」 제85조에 따른 운전면허증

라. 「선원법」 제48조에 따른 선원신분증명서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활성화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장기등 기증희망자등록 신청 의사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개정안에 동의함.

운전면허 응시원서에 ‘장기등 기증희망 여부’ 표시 항목 포함 시 기증 활성화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인체조직기증희망

등록도 동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한국도로교통공단) 기증희망자 대상으로 장기기증의 형태(장기, 조직, 안구 등), 등록 및 사후절차 관리 등에 대한 전문상담 인력(코디네이터 등)이 없고, 공단 고유사업 범위를 벗어난 업무 추가로 민원창구 직원의 업무 과중이 예상됨.

- 이미 장기기증 관련 홍보에 적극 협조 중으로 그 이상의 업무추가는 곤란하며,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을 먼저 장기등기증희망등록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후에도 활성화가 필요할 경우 협조요청한다면 검토할 여지가 있음.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운전면허증의 발급·재발급·갱신, 정기 적성검사 시 장기등 기증희망자등록 신청 접수를 의무화함으로써, 장기등기증·이식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동의함.

다만,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장기등 기증희망자등록 신청 접수 및 그 결과의 통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국공공조직은행) 장기등기증희망신청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장기기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대한의사협회) 개정안은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인지 없이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한 행정적 절차로 오인하여 신청하는 경

우가 있을 수 있고, 기증 신청과 관련하여 추후 유족의 동의 절차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증 발급 등의 상황에서 장기기증 여부를 일괄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것은 자칫 선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쳐질 가능성 등이 우려됨.

이에 장기등기증희망신청은 본인 또는 유족의 충분한 인식 아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신청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국민들의 인식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문 의 처
02)6788-5509

【참고】	장기기증 신청 접수 관련 해외사례
-------------	---------------------------

국가	주무기관	장기기증 접수 방법
독일	DSO (독일장기기증재단)	· 원칙적으로 한국과 같이 장기이식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서면 접수 - '24.3.18.부터 Uber Leben 재단(DSO재단 계열)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장기기증 카드 신청 가능 · 16세 이상이 되면 건강보험사로부터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사후 장기기증 여부를 묻는 서면을 발송하도록 제도화
일본	일본장기기증 네트워크	· 일본 장기이식 네트워크에 온라인 혹은 서면 등록 ·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마이넘버 카드 후면, 서면 기증의향서에 본인 서명하여 기증 의사 확인 · 본인이 여러 이유로 직접 서명할 수 없는 경우, 증인 지명·입회하에 대리인이 양식 작성하며, 여백에 증인과 대리인의 서명과 관계 기입
미국	DLA (Donation Life America)	· 각 주별 등록기관 및 온라인(National Donate Life Registry)을 통해 개별 등록 · 운전면허 응시 및 면허증 갱신 시 원서에 장기기증 희망 여부에 대한 질문을 '예/아니오'로 반드시 체크하도록 표기(각 주 DMV) * DMV : Department of Motor Vehicle(자동차 부)
영국	NHS (National Health Service)	· NHS 등록기관 및 온라인을 통해 개별 등록 · 운전면허 응시 및 면허증 갱신 시 장기기증 희망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도록 표기하여 장기기증 희망 접수(DVLA) * DVLA : Driver and Vehicle License Agency(운전면허 공단)
호주	AODR (Australian Organ Donor Register)	· AODR 등록기관 및 온라인을 통해 개별 등록 · 운전면허 응시 및 면허증 갱신 시 장기기증 희망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도록 표기하여 장기기증 희망 접수(각 주 교통국)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핀란드, 이탈리아 등		· 장기기증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잠재적 기증자로 추정하여 장기적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시행(opt-out 시스템) · 장기기증을 원치 않는 경우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기피 등록을 하거나 사망 전 가족·친척들에게 문서로 남겨야 함